

- 예산군 저소득가정 중·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 
폐지조례안 -

# 검 토 보 고

## 1. 제안이유

- 「충청남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」, 및 「예산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」 시행 등으로 교복구입비 지원이 보편화되어 「예산군 저소득가정 중·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「예산군 저소득가정 중·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」 폐지

## 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 - 「충청남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」
  - 「예산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」
-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○ 그 밖의

가.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나. 입법예고 : 해당없음

- 제외사유 : 「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 
제4조제1항제2호

다. 비용추계서 미첨부

라. 성별영향평가 : 해당없음

#### 4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「충청남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」(2018.10.30. 시행), 및 「예산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」(2019.7.31.시행)의 시행으로 중·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이 보편화되어 「예산군 저소득가정 중·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」(2017.4.7.시행)를 폐지하는 것으로,

○ 관계법령 저촉 여부와 폐지이유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.